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2. 1
기획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월 18일

◦ 회부일자 : 2000년 1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1. 2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0. 1. 1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또한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비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상 45인 이하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던 것을

⇒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 (안 제9조)

○ 차량 등 취득물건 이전시 취득세 이중 신고규정 삭제

차량·건설기계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 부터 30일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시는 전입하는 시도에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미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지 시도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안 제19조 제1항)

○ 자가용자동차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시설대여업용 자동차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의 경우에는 등록명의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 (안 제19조 제3항)

○ 지역개발세의 세율 조정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9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 50전에서
⇒ 2원으로 (안 제70조)

- 지하수는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0원에서
⇒ 200원으로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세제곱미터당 50원
에서 ⇒ 100원으로
 -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원에서 ⇒ 20원으로. (안 제72조)
-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5에서
⇒ 1,000분의 2로 함. (안 제75조)

3. 검토보고 요지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미 취득신고를 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30일전에 타 시·도로 이전하더라도 다시 취득 신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 여신 금융업법에 의한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도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 지역개발세는 현실에 맞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 50전에서
⇒ 2원으로

- 지하수는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0원에서 ⇨ 200원으로,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세제곱미터당 50원에서 ⇨ 100원으로,
 -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원에서 ⇨ 20원으로 하고
- 지하자원의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5에서 ⇨ 1,000분의 2로 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 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70조중 “1원 50전”을 “2원”으로 한다.

제72조중 “100원”을 “200원”으로 하고, “50원”은 “100원”으로 하며, “10원”은 “20원”으로 한다.

제75조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2”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현행	개정 (안)
<p>취득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취득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취득물건이 소재 하는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 에게 부과한다.</p> <p>②(생략)</p> <p>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만,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p> <p>④(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 ----- ----- -----</p> <p><단서 삭제></p> <p>④(현행과 같음)</p>
<p>제24조 (신고납부 등)</p> <p>①~⑩(생략)</p> <p>⑪다른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 건을 전입한 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4조 (신고납부 등)</p> <p>①~⑩(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70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 50전으로 한다.</p>	<p>제70조(과세표준 및 세율) ----- ----- ----- 2원 ----- -----</p>

현행	개정 (안)
제72조(과세표준 및 세율)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세 제공미터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세 제공미터당 50원, 기타 용수는 1세 제공미터당 10원으로 한다.	제72조(과세표준 및 세율) ----- ----- -----200원, ----- ----- -----100원, ----- -----20원-----.
제7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②(생략)	제7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 -----1,000분의 2-----. ②(현행과 같음)

관련법규(부분발취)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 개정 지방세법 ('99. 12. 28 공포 : 법률 제6060호)

제10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단서 삭제>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하는 규정임

제257조제1항제1호중 “1원” 을 “2원” 으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100원” 을 “200원” 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50원” 을 “100원” 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10원” 을 “20원” 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000분의 1” 을 “1,000분의 2” 로 한다.

○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99. 12. 31 공포 : 대통령령 제16,673호)

제58조제1항중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②<단서 삭제> : 다만,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임